#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8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박 정·임오경·진성준

박해철 • 박지원 • 허 영

허성무 · 강유정 · 황명선

안호영 · 송옥주 · 박홍배

김주영 • 이학영 • 김태선

신정훈 · 소병훈 · 이용우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1조의4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사업장은"을 "사업장(이하 "배출저감 사업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등) ①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배출저감 방안이나 배출저감 사업장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저감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보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 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 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 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 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 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 ----사업장(이하 "배 출저감 사업장"이라 한다)은--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 <삭 제> 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등) ① 환경부장관과 사 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하

역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 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 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배출저감 방안이나 배출저감 사업장 등 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저 감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 선・보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 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

<신 설>

제6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u><신 설></u>

- 2. ~ 5. (생략)
- ③ (생 략)

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 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